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제21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18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7조)

-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제11조)

-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안 제17조·제18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의: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 구 조문 대비표: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6. 3. 16~4. 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호중 “읍면동사무소별”을 “읍·면·동별”로 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중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자치센터”라 하고, 같은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그 기능은”을 “그 기능을 예시하면”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중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읍·면·동”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항중

“읍면동사무소별” 을 “읍·면·동별”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읍면동장”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 제4항중 “주민자치위원회” 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6항· 제7항중 “주민자치위원회” 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제4항중 “읍면동장 ” 을 “읍·면·동장” 으로하고.같은항중 “변상”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설치) 읍·면·동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제1항 전단중 “있으며” 를 “있다”로 하고,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본문중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자·사업장종사자·단체의 대표자중” 을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로, 같은항 본문중

“선출된 후보자” 를 “선정된 사람”로, 같은항 본문중 “자를” 을 “사람을”로, 같은항 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 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같은항 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 를 “선정된 사람”으로, 같은조 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 를 “당해 읍·면·동”으로, 같은조 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 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중 “읍면동장” 을 “읍·면·동장”으로 , 같은항 전단 및 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을 각각 “고문”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며,같은항 제1조중 “읍면동사무소” 를 “읍·면·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u>읍면동사무소</u>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u>읍면동사무소</u>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2. (생략)</p> <p>제3조(원칙)<u>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읍면동사무소별</u> 자율적 운영 유도</p> <p>4. ~ 5. (생략)</p> <p>제4조(설치 등) ①<u>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u>는 <u>읍면동사무소</u>에 설</p>	<p>제명 : <u>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조(---)-----「<u>지방자치법</u>」----- ----- ----- ----- -----<u>읍·면·동</u>----- ----- ----- ----- ----- ----- -----.</p> <p>2조(……) (현행과 같음)</p> <p>1. ----- ----- <u>읍-면·동</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u>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u>와 <u>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는-----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읍·면·동별</u>----- -----</p> <p>4.~5. (현행과 같음)</p> <p>제4조(----)①<u>자치센터</u>----- -----</p>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읍·면·동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①-----

----- 그 기능을 예시하면
-----.

1.~6.(현행과 같음)

②----- 읍·면·동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①-----

----- 읍·면·동

-----.

②-----
-- 위원회 -----

----- 읍·면·동 별

-----.

③-----
----- 읍·면·동

-----.

④ (생략)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신설>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① -----
-----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

② -----위원회 -----
-----위원회

-----.

③ 위원회-----
-----위
원회-----

-----.

④ -----
-----위원회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 ③ (생략)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③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위원회
-----읍·면·동장-----"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
-----위원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위원회
-----위원회

⑦ -----

-----위원회

-----위원회-----

제11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읍·면·동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⑤ (생략)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자·사업장종사자·단체의 대표자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 ④ (생략)

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

⑤ (현행과 같음)

제 15 조 (설 치) 읍 · 면 · 동 -----

----- 읍 · 면 · 동 -- 위
원회-----.

제17조(---) ① -----

-----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선정된 사람-----
----- 사람을
-----.

1. -----

-----추천하는 사람
2. -----선
정된 사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해 읍·
면·동-----

은 자를 위촉한다.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생략)
<신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5. (생략)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⑥ (현행과 같음)

⑦----- 고문의 임기는 2년-----

제18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읍·면·동장----- 고문-----

----- <단
서조항 삭제>

1. 당해 읍·면·동의 -----

2.~5. (현행과 같음)

② -----

----- 고문-----

-----.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10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 다만,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

1- 市·道 (생략)

2- 市·郡 및 自治區

第1號에서 市·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 다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